

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0. 17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02. 10. 17

다. 상정일자: 제106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2차 총무위원회( 2002. 11. 1)

## 2. 제안설명요지(장일룡 제무과장)

### 가. 제안사유

-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현재에는 공문서로 조회하던 것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으로 소요 조회를 갈음하므로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.

### 나. 주요골자

#### ○ 조항개정 및 신설

- ▷ 불용물품을 소요 조회후 불용결정하던 것을 불용 결정후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개정하고,
- ▷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

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.

### 3. 관련법령 및 조례

- 지방재정법 제100조(물품의 처분등)
-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이번 조례개정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의 불용결정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소요조회를 한후 불용결정하던 것을 불용결정 후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만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하도록 개정하였고,
-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시는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기준)이 단가 2천만원 이상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공문으로 하던 것을 조달청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도록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임으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### 6. 토론요지 : 없음

#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